

가칭「메가특구특별법」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31.(금) 한겨레, “기간제 4년 허용, 주52시간 제외 포함, ‘반노동 메가특구법’”
- 7.31.(금) 경향신문, “메가특구 앞에 후퇴하는 ‘노동권’”
- 7.31.(금) 매일경제, “與, 메가특구특별법 ‘주52시간 예외’로 가닥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각 계의 입장 등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,
가칭 「메가특구특별법」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
-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어 발의되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음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임희종 (044-202-7064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명 (044-202-7073)